

제 4 차 정기총회

2024. 3. 23. (토)



경제민주주의21
Economic Democracy 21

- 목 차 -

1. 진행 관련

- 1) 경과보고 2
- 2) 개회 안내 4

2. 안건

- 1) 2023년 사업 결산의 승인의 건 6
-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의 건 11

3. 표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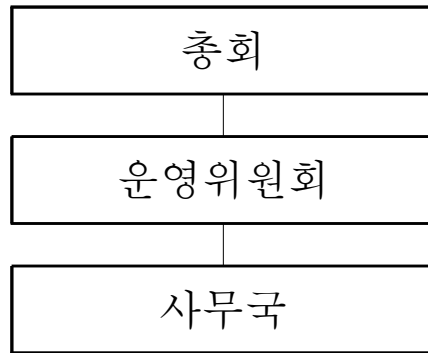
4. 경제민주주의21 정관 17

진행 관련

경과보고
개회 안내

1 경과보고

가) 조직 구성



성 명	직 책
김경을	대표
조혜경	운영위원장
김종휘	운영위원
손 혁	감사
예자선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나) 주요 연혁

- (2019.12.)회원들 간에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새로운 시민단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
- (2020.1.)경제민주주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경제민주주의21 설립을 추진
- (2020.2.)경제민주주의21 단체 설립 및 활동 개시 준비
- (2020.3.11.)경제민주주의21 활동 개시 및 창립 기념 좌담회 개최
- (2020.3.11.)김경을 회계사, 초대 대표에 취임
- (2021.11.20.)제1차 정기총회 개최
- (2022.2.19.)제2차 정기총회 개최
- (2022.2.2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시)
- (2022.6.30.)공익단체 지정
- (2023.3.4.)제4차 정기총회 개최
- (2024.1.2.)조혜경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취임

1 경과보고

다) 전차 회의 보고

< 서식 2 >

총 회 회 의 록

1. 회의일시 : 2023.3.4.(토) 11:00~12:00
2. 회의장소 : 비대면
3. 회의안건 : 2022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2023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
4. 출석회원 : 강창모, 권재현, 권헌창, 김경울, 김대학, 김보운, 김세한, 김영희, 김종백, 김태운, 김혜경, 김혜린, 노재근, 박경철, 박재운, 배준기, 서지석, 서호섭, 손 혁, 신길호, 신학수, 염미연, 이용준, 이장규, 이정우, 이종학, 이지원, 이철수, 이환재, 정순영, 정용수, 정진영, 조연수, 조혜경, 조희양, 차서현, 최경달, 최소영, 최연식, 하숙례, 허효준, 현영호, 황혜주
5. 회의내용
 - 개회: 김경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원 43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시작됨
 - 안건 보고: 김태운 간사가 (1) 2022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2) 2023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의 두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참석 회원들이 동의하여 순차적으로 안건을 논의함
 - 2022년도 사업 결산 승인 건: 김경울이 2022년도 운영성과를, 손혁 감사가 회계 감사보고를, 김태운이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총평을 보고하자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2023년도 사업 계획/예산 심의 건: 김태운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보고하고 참석 회원 모두가 승인하여 의결함
 - 기타 안건 및 의견 제시: 이밖에 ▲현 정부 1주년 시점의 회원 대상 정부 경제·금융정책 집담회 ▲금융사기 사례집 제작·배포 ▲단체의 장기 과제로 자본·금융시장 법제의 사각지대인 범죄자 엄단 ▲외감법·금융기관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회계감시 독립성 현안 ▲경제·금융 학술적 접근의 활동 등이 제기됨
 - 폐회: 김경울이 폐회를 선언함

2023년 3월 4일

대 표 김 경 울

운영위원 손 혁

운영위원 조 혜 경



2 개회 안내

가) 절차

- 공고(이메일/문자메세지/홈페이지): 3월 4일(토)
- '위임장', '서면결의서' 접수 마감: 3월 22일(금)
- 개회: 3월 23일(토)

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중

- 재적회원 120명, 개회 성원 24명, 의결 정족수 12명

다) 식순

배 분	내 용	
11:00~11:05	인사말	
11:05~11:10	개회 및 등록	
	기록 및 감표 안내	
	보고 및 안전 상정	
11:10~11:30	승인/ 심의	안전1) 2023년 사업 결산
		안전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11:30~11:55	기타 논의	
11:55~12:00	회의 결과 보고 및 폐회	

안 건 ①

2023년 사업 결산의 승인의 건

운영성과표

회계 감사보고서

사업 실적 및 총평

1 2023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운 영 성 과 표

제 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4(당)기		제3(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64,085,000		109,153,926
정기 후원 수입	56,545,000		67,345,000	
부정기 후원 수입	7,540,000		41,808,926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64,085,000		109,153,926
IV. 판매비와관리비		49,896,622		47,632,148
직원급여	29,172,200		26,400,000	
상여금	2,390,000		2,130,000	
퇴직급여	2,621,567		4,720,313	
여비교통비	161,000		161,000	
통신비	213,620		451,320	
세금과공과금	3,496,900		1,534,340	
감가상각비	225,800		225,800	
지급임차료	6,600,000		6,600,000	
수선비	276,000		0	
회의비	969,150		622,500	
소모품비	11,000		11,000	
지급수수료	3,594,385		3,015,875	
유통제작비	165,000		1,760,000	
V. 영업이익		14,188,378		61,521,778
VI. 영업외수익		68,248		295,336
이자수익	68,248		108,434	
유통운용수익	0		186,902	
VII. 영업외비용		5,000,000		0
기부금	5,000,000		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9,256,626		61,817,114
IX. 법인세등		10,480		16,680
법인세등	10,480		16,680	
X. 당기순이익		9,246,146		61,800,434

1 2023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회계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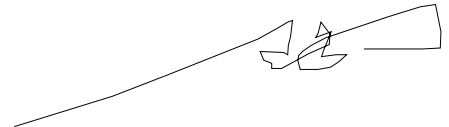
본 監事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경제민주주의21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업무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監事는 경제민주주의21의 회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본 監事の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는 경제민주주의21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상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3월 23일

監 事 손 혁



1 2023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 실적 및 총평

○ 사업/운영 실적

논평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건관리	고발	국회 토론회	유튜브	발간자료
8	1	1	VIK 우리금융지주	가상자산 클레이 관련 카카오 김범수의 11명 고발	3	1	2

- (1.10.)[탈세제보]VIK_용인세무서 과세 활용
- (1.13.)[고발22-01]손태승_남대문경찰서 재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결과 통보
- (1.17.)[논평 50호]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 (1.19.)[논평 51호]불공정 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 (2.15.)[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2.22.)[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3.16.)[논평 52호]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강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 (3.22.)[논평 53호] 금융감독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탈 OEM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하라
- (3.27.)[국회 토론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제 1회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
- (4.14.)[논평 54호] 검찰, 공정위, 금감원은 SK하이닉스-알케미스트캐피탈 간 수상한 거래 의혹 낱알이 밝혀 합당한 처벌해야
- (5.8.)[논평 55호]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 (6.13.)[국회 토론회]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제 2회 복합위기 시대, 한국정치의 돌파구는?
- (6.22.)[국회 토론회]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 (6.22.)[자료집]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원료비 연동제부터 가스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도화까지
- (8.16.)[논평 56호]NFT 등 신기술 이용 불법사금융 신속·엄정 수사 와 가상자산에 유사수신행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9.12.)[보도자료]경제민주주의21, 2023년 9월 13일 오후 2시 가상자산 클레이(KLAY) 관련 횡령·배임, 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 고발
- (9.12.)[유튜브]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
- (9.13.)[고발23-01]김범수(카카오의장) 외 11명[특경법위반(횡령) 등]
- (10.4.)[이슈리포트 23-01]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성
- (10.11.)[고발23-01] 고발인 조사
- (10.27.)[논평 57호] 금융감독원의 카카오 기소의견 송치, 향후 시세조종자금 및 범죄수익 몰수 등 엄벌하여야
- (11.9.)[고발23-01] 김범수(카카오의장) 외 11명[특경법위반(횡령) 등]_추가 자료 제출

1 2023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 총평

- 전년도 대비 논평·유튜브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입장 발표 활동은 다소 줄었으나, 탈세 제보, 고발, 국회 토론회 등 직접적인 활동이 늘었음.
- 소수주주 이익 보호, 지배주주 전횡 방지 등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이 지속하면서, 코인 투자사기 대응, 가상자산 관련 과세와 제도화 관련 이슈를 새롭게 다루기 시작하였음.
- 9월 13일 가상자산 클레이(KLAY) 관련 횡령·배임, 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카카오 전 의장 김범수 외 관련자 11인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 고발하였으며 10월 11일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음.
- 고발 전날인 9월 12일 “카카오 주요 임직원, 관계사들의 ‘클레이(KLAY)’ 나눠갖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성”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였음.
- 이전 정기총회에서 제기되었던 회원 참여 기회 확대 및 회원 모임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성화하여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회원 모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 건 ②

2024년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의 건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서

I. 주요사업 목표

1.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과 주요 정책에 관한 입장 발표와 공론화 활동
2. 금융사기감시센터를 신설하여 금융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고발, 민원 신청
3.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II. 세부사업 내용

1.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입장 발표와 공론화 활동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2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관 단체와 연대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논평, 현안비평,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 다변화된 매체들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21의 활동과 취지를 확산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 1) 시행시기: 2024년 연내
- 2) 장소: 온라인 배포, 기자회견 현장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상 횟수	내용	발표 방법
논평/현안비평	12회/12회	경제민주주의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 발표	홈페이지·페북 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보도자료	10회	고발, 민원 신청, 국회 토론회 활동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페북 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공동성명	6회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유관 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대 및 입장 발표	홈페이지·페북 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기자회견 현장
유튜브 방송	3회	단체 활동 중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방송을 통해 공론화함.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1,140,000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5,000원*12개월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식비) 10,000원*5인*1회*12개월 - 유인물 월 5,000원*12개월 - 온라인 배포 등 통신비 5,000원*12개월
유튜브 제작비	528,000	- 스튜디오 이용료 176,000원*3회
합계	1,668,000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1, 3, 4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특정 현안과 주제의 학술적, 정책적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사안의 해결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3)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들의 논의를 촉진하여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형성과 여론의 관심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 1) 시행 시기: 2024년 연내 4회
-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산 횟수	내용	발표 방법
세미나	4회	-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 대응 - 삼성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재판 대응 - 금융사기 근절 대책 - 금융 과세 대응	자료집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조사 연구 ·세미나 ·출판	6,880,000	- 대관료: 300,000원*4회 - 회의비: 200,000원*3인*4회 - 도서인쇄비: (자료집 제본 50쪽*40부)200,000원*4회 (플래카드)100,000원*4회 - 다 과: 포장 1인 10,000원*40명*4회 - 발표자 여비/교통비: 120,000원*4회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3.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가. 목적:

- 1) 경제민주주의21 정관 제1장 제4조의 5의 목적사업에 해당함
- 2) 경제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현안들에 대해 고발, 국민제안 민원 신청, 질의서 등 시민단체로서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 1) 시행시기: 2024년 연내
- 2) 장소: 국회의원회관 등
- 3) 구체적 내용

구분	예상 횟수	내용	발표 방법
수사 의뢰 ·탈세 제보 ·고소/고발 ·감사 청구 ·질의서 ·송부 등	10회	- 금융사기, 자본시장 범죄 -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소득 과세 - 재벌 지배구조 개혁	보도자료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채널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여비	240,000	- 현장 방문 등 교통비
회의비	300,000	- 30,000원*1회
합계	540,000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4. 회원 모임 활동

가. 목적:

- 1) 회원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21의 성격, 비전, 활동 방향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경제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회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상시
- 2) 사업내용: 독서 모임, 공부 모임, 정치현안 좌담회 등 회원 모임 활동을 제안하고 관심사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함.

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회원 관리	1,560,000	- 후원 회원 관리 시스템 사용료: 130,000원*12개월
회원 모임	1,000,000	- 1회당 100,000원*10회
합계	2,560,000	

2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심의의 건

수 지 예 산 서

제 4(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경제민주주의21

(단위 : 원)

과 목	제 4 (당) 기	
	금 액	
I. 매출액		64,085,000
정기 후원 수입	56,545,000	
부정기 후원 수입	7,540,000	
II. 매출원가		-
III. 매출총이익		64,085,000
IV. 판매비와관리비		53,137,567
직원급여	29,172,200	
상여금	2,390,000	
퇴직급여	2,621,567	
여비교통비	520,000	
통신비	180,000	
세금과공과금	2,700,000	
감가상각비	225,800	
지급임차료	6,600,000	
도서인쇄비	800,000	
회의비	3,300,000	
소모품비	100,000	
지급수수료	4,000,000	
유통제작비	528,000	
V. 영업이익		10,947,433
VI. 영업외수익		110,000
이자수익	110,000	
유통운영수익		
VII. 영업외비용		-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1,057,433
IX. 법인세등		9,000
법인세등	9,000	
X. 당기순이익		11,048,433

표결

경제민주주의21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제민주주의21(이하 “본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경제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사·연구
2.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 발표
3. 학술 및 정책 세미나 개최
4.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가입비 및 개인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한다.

2. 특별회원은 특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로 정한다.

③ 회원의 가입자격과,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단체의 장(이하 “대표”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납부가 완결된 이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대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먼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후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단체 발간물의 이용
 2. 본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의 참여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회 직담임권을 갖는다.
- ②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3. 감사

② 대표는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 ③ 본 단체의 임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본 단체의 최초 임원 선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대표 직무대행자】 ①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대표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자는 대표의 궐위시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② 감사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대표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전원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

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겸임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장이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총회 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임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6.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 2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대표가 겸직한다.

제23조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매 1월,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운영위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3조 【정족수 및 업무】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을 허용한다)과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서면(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면 또는 문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허용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운영 방법】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와 재정

제25조 【수익금】 ① 본 단체의 수익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 1.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 2. 기부금
- 3. 적립된 기금의 운영수익

4. 사업수익 및 기타 잡수익

- ② 회계연도 종료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③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특별회계】 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예결산의 보고의무】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③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9조 【해산절차】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잔여 재산의 처분】 단체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의 선임】 본 단체 설립 시 최초 임원은 본 단체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